

建築審議와 建築士業務

尹 鳳 源

- 1. 건축심의의 목적
- 2. 건축심의의 한계
- 3. 건축심의의 필요성
- 4. 현재 건축심의의 실태
- 5. 건축사의 업무
- 6. 건축사 업무의 중요성
- 7. 바람직한 건축심의의 방향

1. 건축심의의 목적

각지방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심의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각지방 각지역에서의 건축심의의 목적은 그지방 그도시의 기능과 미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제조건을 구비하여 심의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코자 함에 있다고 본다. 보다 아름답고 보다 기능적인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하겠다. 특히 건축행정 면과 지방마다의 특색 있는 기능을 살리고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건축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다고 본다. 더 생각해본다면 설계자인 건축사 각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올바른 건축문화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보여진다.

2. 건축심의의 한계

극히 객관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심의를 해야겠고 건축설계자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가 끝나야 되리라 본다. 심의기준을 벗어나서 개인 설계자의 특성까지를 범하면서 심의가 깊어질수 없으며 특히 제작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짧은 시간내에 여러 건축사들의 작품을 제작면까지 볼 수도 없고 또 침해해서도 않되겠다. 설계자인 건축가를 돋고 지방실정과 앞날의 건축문화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시안적이고 원대한 계획에 과녁을 맞추어 나가야 하겠다. 심의위원회의 하는 일이 건축사들을 돋고 자문하는 일에 끝나야 하겠고 지시나 지도를 하는 위치에 군림해서는 문제가 되리라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설계자는 설계를 위하여 건축주와 많은 대화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화 했을것이고 그소재에 의하여 많은 시간연구와 창의력을 경주하였을것은 명백하다. 필요한 작품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예술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준비했을것으로 보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여 일시적으로 느낀대로 제작에 침해를 갖어온다면 보통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심의의 한계도 제작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범위라야 하겠다.

3. 건축심의의 필요성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또는 규칙조례 외에도 특별법 등이 수시로 변경하는 건축행정의 질서문제가 크게다루어져야 하는 세월이고 보면 개인 건축사가 변화하는 법을 다알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리라 본다. 그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각지방의 특수성과 맞추어 가기 위하여 지방건축행정법을 전달하고 시행키 위하여 중요하다고 본다. 한사람의 건축사가 법만을 다룰수도 없다고 본다면 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법전체적인 자문을 구하여 정부시책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하기 위함이다.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시행해야하는 과정에서 너무 법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니 이를 속히 전달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없도록 사전심의함에 필요성을 느낀다.

4. 현재 건축심의의 실태

과거보다는 많은 개선과 발전을 했을것으로 본다. 예를 들자면 얼마전 심의위원회의 개편을 들수있겠다. 전공분야 별로 생각을 했다던가 또는 관직의 위원을 줄이고 순수한 학계에서 중원을시도 했다던가 하는점은 많은 개선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도 심의위원회 직권으로 건축사들의 작품을 재심의하는 명목으로 지시 감독하고 창작품에 깊이 출을긋고 짜르고 붙이고하는 심의가 아직도 계승되고 있는 실태이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설령 부족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평가에 입장을 살려가면서 업무수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작품심의 시간이 바쁠때는 2~3분정도 걸어야 몇분 되고있지 않은가. 심의위원들이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해도 정도문제가 아닐까싶다. 몇주 몇개월에 걸쳐 연구하고 엮은 작품들을 누구도 몇분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칠질을 한다는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심한경우는 10여회의 재심의 경우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니 문제가 되겠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심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도 지켜지지 않

고 있으며 기본법마저 뭉개지고 있는 일이 허다하니 어떻게 해석을 할것인가? 예를 들자면 대지면적에 최소한이라던가 일조권이라던가 대지안에 공지법이라던가 건폐율 등 기본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건축사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법을 지켜야 할것인가? 같은 서울시내의 경우도 구청별로 심의기준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니 왜 이렇게 어지럽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될다는 것일까? 어떤법이 우선인가? 무엇을 지켜야할까? 심의위원회는 기본법도 없이 생작나는대로 개인의 생작대로 이끌어야 하는가 그대로 팬fbe은가? 다행히 몇번에 재심에서 통과를 보았다고하자. 다음판문인 허가를 책임도 못지면서 통과한 작품이 허하다. 심의는 무엇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인가? 현재 심의하고있는 방향은 행정적인 심의가 아니고 제작품에 깊이 손을 대고 있는 파오를 범하는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설계의 수준은 심의위원회들에게 무더기로 넘겨져야 할 업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종합예술업무라고 자칭하는 건축설계 업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 각자의 개성 작품등 단정히 어려운점을 어떻게 그리쉽게 손을 뱘수 있는지?

5. 건축사의 업무

우수한 건축을 위하여 설계하고 설계된 작품을 잘 지어 되도록 감리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업무를 맡은것이 건축사 본연의 업무요 책임이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는 전체 설계를 책임을지고 있고 또 잘못되었을때는 책임추궁도 당한다. 기능적이고 예술적이요 경제적인 우수한 건축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것이 건축사 업무가 아닌가? 짜르고 불이 고한 심의를 거쳐 지은집이 잘못되었을때 심의위원회들이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에 부담도 지겠는가? 현재실정으로 그렇지 않는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왜 건축사의 업무를 깊이 관여하는지 알수가 없다. 이로 미루어 건축사 업무에 책임한계 범위를 판여 할수 가있는지? 건축주중에는 건축사의 업무가 건축허가에까지 책임을 지는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행정가도 때로는 건축사에게 허가책임을 지울려는 물지작한자도 있는 듯하다. 설계는 건축사가 허가는 건축주가 허가권자는 행정가들이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6. 건축사업무의 중요성

건축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역군으로써 어떤환경이라도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

겠다. 한사람의 건축사가 잘못하여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지 않는가? 한사람의 의사가 잘못했을때는 1명의 인명이 죽어 가지만 한사람의 건축사가 잘못했을때는 수많은 인명피해도 낼수 있듯이 무서운 결과를 직시하고 책임을져야 하겠다. 과거에 전물을보고 보기싫은점을 발견했을때 후손대대로 욕을하지 않는가? 서예가나 화가가 만든 작품은 개인이 소장하지만 건축물이란 창작품은 온천하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미치는 영향이 크다는것을 알아야 하겠다. 판에 개입이 어렵고 건축주가 어떻게 잔소리했으며 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건축가의 양심에 호소해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완성하고 책임지는 설계를 해야 하겠다. 일시적인 오판이나 게으름이 다가오는 몇 세기를 두고 욕거리로 남는다면 어찌 소홀히 다룰수가 있겠는가? 최선을 다했어도 미흡한점이 하나둘이 아닐진데 그렇지 못해서 파오를 범하는일은 없어야 하겠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차라리 포기하는편이 현명하리라 본다.

7. 바람직한 건축심의의 방향

파도기적인 위치에서 필요로하는 과정이 되여 지기를 바란다. 현재위치에서 건축심의의 방향은 건축행정심의에 머물려 주었으면 싶다. 건축행정은 다분히 복잡하고 또 지도를 받아야할 분야가 있다고보기에 그려하다. 건축가가 일일히 법만 을 다룰수가 없기에 자문을 받는다고 보면 좋은일이라 생각된다. 심의기준 또한 모순이 많다고 보는데 모법에 정신은 모법에 정신대로 맞추어서 시행해야 하겠고 심의기준이 선다고 해도 모순되며 속히 시정해야 하겠으며 일시적이고 근시 안적인 어떤개인의 의사가 전체의사인 양 지켜지는것은 큰모순을 낳는것이다.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심의에서 사람이 있다면 우선 심의위원회에서부터 검토 되어야 하겠다. 대학교수라고 건축술에 전부를 아는것이 아니니만큼 전공분야 별로 구성되어 어느 한분야도 소홀함없이 자문해야 하리라 믿는다. 심의위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각지방 행정과 실정을 잘알아서 적합하게 심의가 되여야 하겠고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다음 자문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심의기준은

원시적이고 전문적이며 세월이 흘러서 후세에 까지도 부끄러움이 없을 건축문화를 이룩하기에 부족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하겠다. 법에 변화가 없이 안정기에 들어 선다면 심의라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제도는 점차 없어져야 하겠다. 책임지는 건축사가 건축작품을 구사하는 시기가 와야 하리라 본다.

建築研究所 源建社